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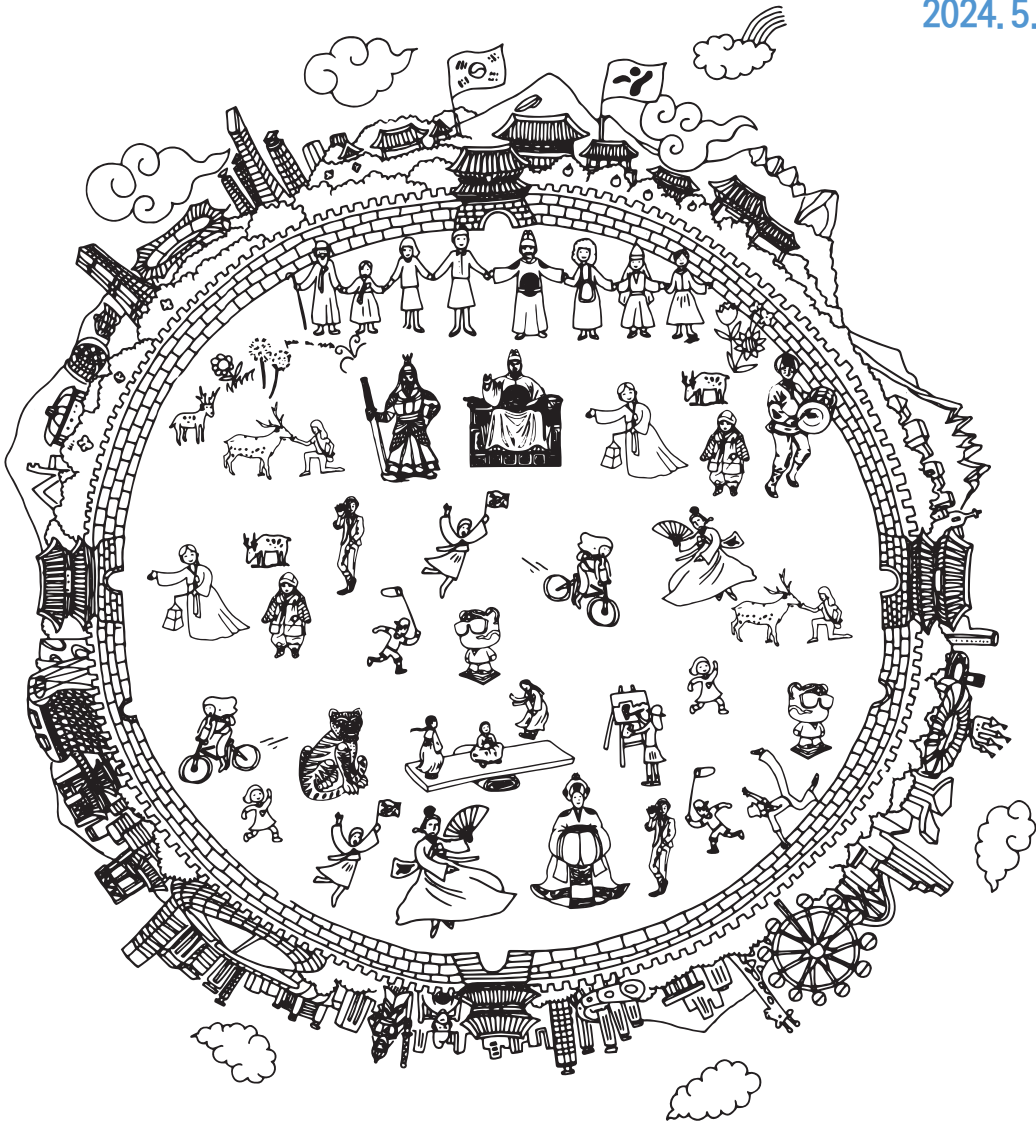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80호
2024. 5. 27.(월)



목 차

◆ 공 고

제2024-1602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	2
--------------------------------------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02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예산안 (1건)	1	서울특별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조례안 (1건)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 증감	%
계	47,299,083,881	45,788,052,478	1,511,031,403	3.30
일반회계	34,205,240,307	33,061,762,221	1,143,478,086	3.46
특별회계	13,093,843,574	12,726,290,257	367,553,317	2.89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경호(☎680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안전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의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2. 29. ~ 3. 2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정성재 (☎2133-710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시(자치구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략)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u>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시(자치구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없음

4. 작성자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지방시설주사보 정성재(☎02-2133-7102)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